

# 2024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신체 보호, 공정한 업무 수행,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상 이익 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 범위의 명확화·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법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는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명령에 불과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지 여부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인지 여부
  -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임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 고
감 사 관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li> <li>●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 거래 내역</li> </ul>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14조
	공직자 병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의 병역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li> </ul>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 고
감 사 관	공익신고자 등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li> </ul>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부패행위 신고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li> </ul>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양 성 평 등 가족정책관	상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li> </ul>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li> </ul>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이용자 등 관련 정보</li> </ul>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세 정 담 당 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li> </ul>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법 무 혁 신 담 당 관	통계 기초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li> <li>* 단, 통계법 제30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심의하여 제공</li> </ul>	통계법 제33조
	미공표 승인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장으로부터 미공표 통계로 승인을 획득한 통계 및 통계자료</li> <li>* 미공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공표</li> </ul>	통계법 제27조제3항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 고
법 무 혁 신 담 당 관	소청심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li> <li>●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li> <li>● 위원회의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행정심판 운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중인 청구사건의 심의에 참석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li> <li>●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li> <li>●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li> </ul>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경 제 기업 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li> </ul>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복 지 정 책 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li> <li>●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li> <li>●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li> <li>●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li> </u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해 취득한 정보</li> </ul>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보 건 정 책 과	정신질환자 관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 명단 또는 현황</li> </ul>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 고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정보 (검사 및 지원·관리에 관한 정보)</li> <li>●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li> </ul>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제8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정보</li> </ul>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건축문화과	건축분쟁 조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li> <li>* 건축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li> </ul>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6
동물방역과	가축전염병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li> <li>*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li> </ul>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6항
기후대기과	환경분쟁 조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li> </ul>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균형발전과	도시계획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li> <li>* 심의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 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li> </u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인사혁신과	징계 심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징계)위원회 회의자료</li> </ul>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정보통신과	통신비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li> </ul>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119 종합 상황실	통신비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업무용 주파수 현황</li> </ul>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1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 비공개 이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 12629)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비공개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해야 함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 및 물자 동원, 예산편성 내역 등 관련 정보
안 전 정 책 과	국가지도 통신망 운용	● 국가지도 통신망 및 보안장비 운용 현황
	비상대비 계획	● 지역방위(을지연습, 화랑훈련, 통합방위 등) 회의록 ● 을지연습 시행계획 ● 충무·화랑훈련 계획 ● 동원자원조사계획 ● 인력동원계획
자 연 재 난 과	비상대비 계획	● 전시 자연재난 피해조사·복구 계획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교통철도과	비상대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수송 동원계획</li> </ul>
행정운영과	비밀취급 관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취급인가자 명단</li> <li>● 비밀문서 현황</li> </ul>
	귀빈 참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국무총리 등 귀빈 방문 정보</li> </ul>
	직장 민방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 직장민방위대 편성표</li> </ul>
	청사방호 관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재난대비 관련 정보</li> <li>● 청사 순찰시간, 순찰경로, 순찰일지</li> <li>●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 저장위치(회계과)</li> </ul>
도민소통과	남북협력사업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정보 (계획서, 결과보고 등)</li> <li>●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정보 (집행내역, 정산서류 등)</li> </ul>
정보통신과	정보보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통신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li> <li>●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li> <li>● 해킹, 사이버테러 방지계획</li> <li>● 암호장비운영현황</li> <li>● 보안시스템 배부(반납) 증명서</li> <li>● 단말기 비밀보호(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li> <li>● 보안교육일지 및 보안진단 정보</li> <li>● 보안업무 추진계획</li> <li>● 암호취급소</li> <li>●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li> <li>● 무선통신망 운영현황</li> <li>● 정보통신보호시스템 현황</li> <li>●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li> <li>● 정보통신 네트워크 현황 및 구성</li> <li>● 정보시스템 보안성검토 자료</li> <li>● 정보통신주소체계(IP) 현황 자료</li> </ul>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 행정법원 2008구합31987)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보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li> <li>●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li> <li>●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li> <li>-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li> </ul>
식의약안전과	마약관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관리에 관한 정보</li> </ul>
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내역에 관한 정보</li> </ul>
도로과	도로편입 토지 등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서류</li> </ul>
도민소통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 정보</li> </ul>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보호를 위함 (대법원 2004두12629)
-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2013구합50999)
-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대법원 2009두19021)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원, 정보수집기법 등 정보수집 경로와 방법이 노출되어 장차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지거나, 그 불법행위의 방식이 정보누출을 피하여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게 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한함(전주지방법원 99구147)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수사관련 정보	● 검찰, 경찰 등 수사의뢰에 협조 중인 사항
감 사 관	감사업무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법 무 혁 신 담 당 관	행정소송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사 회 재 난 과	민생사범 관련정보	● 민생사범 단속계획, 수사결과 보고 등
도 로 과	반환금청구 소송 정보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소 방 행 정 과	소방사범 수사 정보	● 소방사범 사건수사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

\* 정책기획중, 정책입안중, 의견수렴중, 회의중, 심사진행중, 자문진행중 등

###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대법원 2001두8827)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0두2913)
-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대법원 2002두12946)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과정</li> <li>또는</li> <li>내부검토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확정 전 검토정보</li> <li>●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li> <li>● 진행중인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li> <li>● 외부 법률 자문 및 법령 해석 자료</li> <li>● 의사결정과정 등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감독·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지도점검 계획 ※ 종료 후 공개</li> <li>● 감독·지도점검 업무 개선안</li> </ul>
감 사 관	고충민원 조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li> <li>* 조사대상자로서 본인 관련 조사기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li> </ul>
	감사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li> <li>●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li> <li>●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li> <li>●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li> </ul>
양 성 평 등 가족 정책 관	청소년센터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직원 임용, 해직 등에 관한 정보</li> </ul>
인 사 혁 신 과	성과평가 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성과평가 결과</li> <li>● 공무원 성과계약평가(조정점수, 최종평가결과)</li> </ul>
예 산 담 당 관	예산안 심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 심의조서 등 예산안 심사 정보</li> </ul>
	예산성과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성과금 운영정보(성과금 및 격려금 결정규모, 성과금 심의시 논의내용 등)</li> </ul>
	균특회계 편성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특예산 심사정보(사업 및 사업비)</li> </ul>
	위원회 운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정보</li> <li>●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운영 정보</li> <li>● 예산심사위원회 운영 정보</li> <li>●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정보(보조금 심사정보 등)</li> </ul>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예산 담당관	공기업 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의사결정과정에 해당하는 정보</li> <li>● 공사, 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li> <li>● 공사·공단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관한 정보</li> </ul>
	정부예산 확보 부서 평가 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예산 확보 부서평가 결과</li> </ul>
세정 담당관	도금고 지정 계약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고 지정관련 정보</li> <li>● 계약관련 정보</li> <li>● 영업 관련 비밀 정보</li> </ul>
법무혁신 담당관	제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공무원 제안서</li> <li>● 국민·공무원 제안심사 및 채점결과</li> <li>● 국민·공무원 제안 심사안</li> </ul>
산단관리과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 협의, 내부검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전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관련 서류 등</li> </ul>
혁신도시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협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협의에 관한 정보</li> </ul>
행정운영과	조직개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li> </ul>
회계과	자금운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배정·여유자금 증식과 관련 정보</li> </ul>
	입찰계약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li> </ul>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운영과	조직개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li> </ul>
인사혁신과	근무성적 평정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자료</li> <li>● 근무성적평정결과</li> <li>●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li> </ul>
	성과상여금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 등에 관한 정보</li> </ul>
	임용 및 승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계약직 포함) 및 공무원직원의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li> <li>●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li> </ul>
	인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정보</li> <li>● 공무원 및 공무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 교류,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li> </ul>
	임용시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공무원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ul>
	공무원 및 공무원직원 노조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공무원직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 비공개 이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4두12629)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1두2361)

- 공개청구대상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며,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비공개대상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및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 여부 등을 판단 (대법원 2004두9180)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민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li> <li>●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li> <li>●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li> </ul>
	각종 상담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li> </ul>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li> <li>●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li> <li>●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li> <li>● 공무원의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성적, 학력, 급여·수당내역 등에 관한 정보</li> <li>-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li> <li>- 집 주소, 개인 전화번호</li> <li>-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li> <li>- 재산 및 채무 현황</li> <li>-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li> </ul> </li> </ul>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행정처분 관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li> </ul>
감 사 관	공무원 신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li> </ul>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li> </ul>
예 산 담 당 관	공기업 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li> </ul>
세 정 담 당 관	지방세 체납자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체납자 주소, 재산조회사항 등) 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li> </ul>
노 인 복 지 과	학대피해노인 신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노인 관련 개인정보, 상담내용 등</li> </ul>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역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역학조사서</li> </ul>
균 형 발 전 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록</li> </ul>
교 통 철 도 과	과태료 부과 및 압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li> </ul>
	신원조회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운전자격취득 제한 강력범죄 조회결과</li> </ul>
토 지 정 보 과	토지소유 현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li> </ul>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행정운영과	주민등록 및 인감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연계 가족관계사항 정리</li> <li>● 인감업무</li> </ul>
회 계 과	직원급여 압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li> </ul>
인사혁신과	공무직원 신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직원 징계관련 정보</li> </ul>
소 방 본 부 (소방행정과· 대응총괄과)	화재조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조사관련 정보 (화재현장 방화관리 및 화재피해 주민 인적사항 등)</li> <li>● 화재증명원 발급 관련 정보</li> </ul>
	구조구급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구급 증명서, 관리대장 등 구급수혜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li> <li>● 무선페이징 수혜자 정보</li> </ul>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 비공개 이유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대법원 2008두13101)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대법원 2008두13101)
-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및 영업규모 등 제반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앙행심 2012-24651)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라 함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들 수 있으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용역사업 관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li> </ul>
	법인·단체 등의 내부관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 인사, 경영방침 등 내부관리정보</li> <li>● 핵심기술, 영업상 정보, 사업계획서 등 법인이 제안한 내용</li> </ul>
감 사 관	감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소 상 공 인 정 책 과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 사업제안서</li> </ul>
에 너 지 과	에너지 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별 에너지 사용량 신고에 관한 정보</li> </ul>
투 자 유 치 과	투자개발 사업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관련(관광리조트 등) 주요 공모기준 등 협의과정에 있는 정보</li> <li>● 민간투자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정보</li> <li>● 투자협약서(향후 투자계획 포함 자료)</li> </ul>
혁 신 도 시 발 전 과	입주기업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러스터 입주기업 입주승인에 관한 정보</li> </ul>
교 통 철 도 과	불법신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li> </ul>
	회사경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결정과정</li> <li>● 시외버스 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내용</li> </ul>
회 계 과	입찰계약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li> </ul>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 비공개 이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

###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산 단 관 리 과	산업단지 지정 계획 관련 정보	● 투자의향서 등 주민열람 공고 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정보
건 축 문 화 과	재정비촉진 사업 정보	●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 결정이전의 정보 및 지구 지정과 관련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정보
관 광 과	관광(단)지 개발정보	● 관광(단)지 개발 등 협상 추진사항 정보

부 서 명	소 관 사 항	비공개 대상 정보
농 업 정 책 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일체의 관련 정보</li> </ul>
균 형 발 전 과	도시계획 진행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절차가 이행중인 정보</li> </ul>
	지구단위 계획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li> </ul>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li> </ul>
도 로 과	도로공사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이전의 정보</li> </ul>